

사천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사 경과

- 제 출 : 2007. 4. 4.(사천시장)
- 회 부 : 2007. 4. 4.(총무위원회, 의안번호 제31호)
- 상 정 : 2007. 4. 16.(제113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의결)

2. 제안설명 요지(총무과장 엄정기)

가. 제안이유

실무를 담당하는 핵심중간관리계층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수행 역량을 강화함과 아울러 승진적체가 심한 7급 정원 일부를 6급 정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인력의 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행정조직의 효율을 높임

나. 주요내용

- 1)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합계는 종전과 같음

- 정원 : 856명

- 2) 직급별 정원 조정(안 제3조)

- 일반직 6급 정원확대(증 6명) : 170명 → 176명

- 일반직 7급 정원축소(감 6명) : 217명 → 211

다. 관계법령

- 지방자치법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

- 지방자치단체의 6급 정원책정비율 확대 등 정원규정시행규칙 개정
에 따른 조직관리지침(행정자치부2004. 9. 24)

- 행정자치부령 제 253 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
관한 규정 시행규칙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최진기)

- 개정조례안은 「지방자치법」 제103조와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21조제2항에서 ‘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당해 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.’라고 규정되어 있으며,
- 2004. 9. 24자로 개정된 행정자치부령 제253호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제18조제2항 별표5에서 ‘도·농복합형태의 시는 6급을 일반직 총수의 26% 이내, 7급을 30% 이내로 한다.’라고 규정함으로서
-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의 총합계는 변경없이 일반직 6급을 6명 정원 확대하고, 일반직 7급 6명을 정원 축소하는 내용임.
- 검토의견으로는 개정된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」 등에 의거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, 승진 적체가 심한 7급 정원 일부를 6급 정원으로 조정함으로서 하위직 공무원의 사기를 크게 진작시킬 것으로 판단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 : 없음